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280
----------	-------

발의연월일 : 2023. 4. 12.

발 의 자 : 박수영 · 하태경 · 류성걸
정찬민 · 박정하 · 김예지
김미애 · 김성원 · 정동만
조경태 · 전봉민 · 서병수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하여 ‘고액 일당 지급’, ‘보험금 많이 받는 법’ 등과 같은 가장(假裝) 광고 등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경험이 적거나 소득이 낮은 사회 초년생, 무직자 등이 보험사기에 연루되고 있음.

이에 보험사기행위 근절을 위하여, 보험사기행위의 알선 및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행위 알선·광고 게시물을 발견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및 안 제14조 등).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보험사기행위의 알선·광고 금지) ①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의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험사기행위를 알선 또는 광고하는 내용의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중 “보험사기행위”를 “보험사기행위(보험사기행위의 알선·광

고 행위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4조 중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 또는 광고한 자
2.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7조의2(보험사기행위의 알선·광고 금지) ①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②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의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u>③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험사기행위를 알</u>

제12조(비밀유지의무) 보험사기행위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벌칙)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신 설>

선 또는 광고하는 내용의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비밀유지의무) 보험사기행위(보험사기행위의 알선·광고행위를 포함한다)-----

제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 제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 또는 광고한 자
2.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타

	<u>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u> <u>자</u>
--	--